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의 수립과 강화발전

김 희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받을수 있으며 선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383폐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게 세워지고 발전완성된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의 수립과 강화발전과정은 인민민 주주의혁명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의 선거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는 무엇보다먼저 인민민주주의혁명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선거제도의 력사적뿌리에 토대하 여 해방후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봉건적통치와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와 억압만을 받으며 그 어떤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한 우리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참다운 대표를 직접 선거하려는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서 진행된 민주주의선거의 실천적경험에 토대하여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수립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9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2차확대위원회에서 하신 결론《선거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도인민위원회사업에서 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 기초하여 채택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북조선 면, 군, 시 및 도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규정》(주체35(1946)년 9월 14일), 《북조선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규정》(주체36(1947)년 1월 11일)에 의하여 수립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자명부작성절차, 선거구와 선거분구 및 선거위 원회의 조직, 후보자추천절차, 선거방법과 선거결과의 확정절차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당시의 선거규정에서는 20살이상에 달한 북조선의 모든 공민은 성별, 재산상태, 지식 정도, 거주지역,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정신장애자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외국국적을 가지고 북조 선지역에 거주하고있는자, 친일분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친일분자들로는 조 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고문전부, 도회의원, 부회의원으로 있던자, 《조선총독부》및 도 의 책임자로 근무한자, 일제와 협력할 목적으로 일제에게 군수품생산기지와 경제자원을 제공한자, 해방전 친일정당과 단체의 당수나 열성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협조한자들로 규정하였다.

선거권부여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우리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며 선거의 계급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인민위원회를 인민의 진정한 대표 들로 꾸릴수 있게 하였다.

선거규정에 따라 모든 공민들은 1인 1표의 투표를 하였으며 선거자들은 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하였다. 투표에서는 선거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선거자명부작성질서에 대하여서도 규정하였다.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20살에 이른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들이 등록되며 한번이상 등록될수 없게 하였다. 선거자명부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비준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해당 인민위원장과 서기장의 서명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선거구와 선거분구, 선거위원회조직질서에 대하여서도 규제하였다.

선거구는 선거자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선거구는 면, 군, 시, 도인 민위원회 선거구로 구분하였으며 그것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조직하였다.

선거위원회는 각급 인민위원회안에 조직하도록 하였다. 다시말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 원회에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조직되고 도, 시, 군, 면인민위원회에 각급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게 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후보자추천절차에 대하여서도 명백하게 규제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각급 인민위원을 추천하는 권리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일체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및 집단에 부여하였다.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집단은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록과 함께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를 받겠다는 승인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해당 선거위원회는 선거일에 이르기 15일전부터 라지오,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자들에게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소개하며 모든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는 자기 후보자에 대한 선전선동을 자유로 할수 있었다. 각 선거구에서는 다만 한사람의 후보자만을 당선시킬수 있었다.

선거규정에서는 선거절차와 선거결과확정질서에 대하여서도 규제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표를 두장을 받아서 그중 한장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다른 한장은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의 확정은 지적된 선거시간이 지난 다음 분구선거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시간이 지나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한 표수와 선거자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수와 대조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규정된 양식과 색갈이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인정하였다. 선거표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의문을 분구선거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 해결하였다.

당선자로는 최고득표수를 얻은 후보자가 인정되였으며 그 득표수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투표수의 반수이상이 되여야 유효한것으로 되였다. 만일 한사람의 후보자도 최고득 표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위원회가 이 사실을 회의록에 특별히 기록하고 상급선거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선거규정에서 규제한 이상의 내용은 해방후 발표된 선거규정들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성격과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여준 민주주의적선거법규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는 주체37(1948)년 7월 10일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더욱 공고 발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공화국정권의 군중적지반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선거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선거제도로 강화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육성된 우리 인민들에게 정치적권리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제도의 내용을 보다 발전완성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선거제도는 주체45(1956)년 11월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구역)인민회의선거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인민회의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선거제도에서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 20살이상으로 규정하였던 선거나이를 18살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선거나이를 18살로 낮추어 규정한것은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특히 조국 해방전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육체적으로 단련육성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실정을 반영한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을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궁지감,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게한 정당한 법적규제였다.

선거권을 박탈하는 대상의 범위도 최대한 제한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대상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하였던것을 삭제하였다.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대다수는 청산되고 그 나머지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더우기 과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나 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과거를 용서해주고 정치적권리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어난 우리 나라의 력량관계의 변화를 반영한것이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재판소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자들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명백히 하였다.

검찰소의 결정 또는 재판소판결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거나 징역집행중에 있는자들에 게는 철저히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재판소판결에 의하여 강제로동의 복역중에 있거나 의무로동집행중에 있는자, 재판소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받고있는자들은 철저히 선거자명부에 등록되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 선거

자명부가 작성된 후 징역형집행으로부터 형기가 완료된자들도 선거자명부에 추가로 등록되며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의 선거제도가 극소수적대분자들을 제외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완전한 선거권실현을 보장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선거규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인민회의의 임기를 수정보충하였다. 그리하여 최고인민회의 임기를 3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였으며 도인민회의의 임기도 3년으로부터 4년으로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는 다음으로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적권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해주는 사회주의선거제도로 강화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는데서 사회주의선거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주체56(196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송림선거구 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에서 하신 연설 《인민주권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선거제도의 확립과 공고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에기초하여 선거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가 완비된 사회주의선거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우리의 사회주의선거제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선거제도로 끊임없이 발전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선거제도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정치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선거제도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를 수령영생위업, 선군정치실현의 기구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선거제도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기본핵으로 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가장우월한 선거제도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사회주의선거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을 비롯한 법규범에 의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시대적요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 구를 반영하여 선거나이와 선거권부여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규제함으로써 일반적선거원 칙을 더욱 발전완성시켰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선거나이를 17살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17살이상의 모든 공화국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받게되였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도 역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추천절차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규제하였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각급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이 국가정치에 직접 참가할수 있게 하며 인민대중의 참다운 대표들로 주권기관을 꾸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더욱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추천된 후보자는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해당 선거구의 대의 원후보자로 정식 등록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주민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 군부대에서 진행하며 후 보자는 반드시 회의참가자들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투표에서 복잡성을 없애고 선거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명백 히 표현할수 있도록 투표질서도 더욱 완성하였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재선거와 보충선거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규제하였다.

재선거는 등록된 대의원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였거나 당선자가 임기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선거받을 권리를 잃은 경우, 선거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확정된 해당 선거구 또는 분구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보충선거는 대의원이 사망하였거나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어 소환된 경우,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이 해당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경우에 진행하며 선거는 반드시 대의원이 결원된 해당 선거구에서만 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선거제도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임기를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의 확립과 공고발전은 우리의 국가정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뚜렷이 시위하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를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더 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